

1. 개정 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됨. 이에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의 기준과 사업변경, 요금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및 관리대장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나.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4조 및 별표 4)

다.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허가절차, 허가기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허가의 갱신, 기여금 수납기관,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10까지, 별표 6의2)

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면허절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 면허기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운임·요금의 신고, 준용규정 등을 규정(안 제93조의11부터 제93조의19까지)

마.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등을 규정(안 제93조의20부터 제93조의22까지)

바.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5)

사.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허가·면허·등록·인가·신고 등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6조 또는 법 제49조의2”를 “제36조, 법 제49조의3, 법 제49조의10 또는 법 제49조의18”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면허·허가”로, “면허증”을 “면허증, 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허증”을 “면허증, 허가증”으로, “면허대장”을 “면허대장, 허가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면허증”을 “면허증, 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각각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등록증)”을 “(허가증,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증”을 “면허증, 허가증”으로 한다.

4.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5. 법 제49조의10에 따라 면허를 하였을 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

6. 법 제49조의18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제9조제2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라목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를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항”을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를 “법 제21조제13항, 법 제26조제1항제9호, 법 제49조의3제6항 및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장의2 제목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장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장에 제93조의10부터 제93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동차 보험가입 증빙서류

7.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

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제9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9.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3.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연식 및 확보방법

4. 주 운행지역 및 각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관리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7. 운송플랫폼의 현황, 운송플랫폼의 개발, 유지, 보수, 운용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송플랫폼의 운용 계획 등

8. 법 제49조의7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 확보 방법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방안

9. 영업관리 및 차량관리 계획

10. 요금 설계 내용

11.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비스 특화 계획

- 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 유형 및 운영계획
- 나. 차량 색상, 마크 등 브랜드 특화계획
- 다. 그 밖에 서비스 특화계획

12.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계획

-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3조의2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플랫폼운송시설등을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시설등을 확인할 경우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 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93조의6제5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의4(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저 허가기준 자동차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이하 “플랫폼운송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시설등의 확인에 대해서는 제9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6(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주사무소의 이전

3.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②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의 운행실적 및 영업손익 등 사업 운영 실적
2. 법규·의무 위반 관련 처분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 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갱신한 경우 제6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2.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3조의8(기여금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13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가계산이나 그 밖에 운임·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관련 서류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0(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플랫폼운송약관의 기재사항,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 제출,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58조의3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7.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송가맹점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대수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7. 운송플랫폼의 현황, 운송플랫폼의 개발, 유지, 보수, 운용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송플랫폼의 운용 계획 등

8.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다. 운송가맹점의 법률준수에 대한 관리 계획

9. 요금 설계 내용

10.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비스 특화 계획

가. 부가서비스 유형 및 운영계획

나.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다. 그 밖에 서비스 특화계획

11.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계획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3조의11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 등이 제93조의16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3조의13(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9조의10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이전·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 서식의 플랫폼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7(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93조의18(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13제1

항에 따라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가계산이나 그 밖에 운임·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관련 서류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9(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3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운송플랫폼의 현황, 운송플랫폼의 개발, 유지, 보수, 운용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송플랫폼의 운용 계획 등

3.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하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운송플랫폼에 부가되는 서비스

5. 운송플랫폼 배포 계획 및 운송플랫폼을 통한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6.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③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운송플랫폼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93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플랫폼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1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22(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운송사업자, 플랫폼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1호가목 1)부터 3)까지 중 “운송사업자”를 각각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4) 가) 및 나)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1호가목 4) 가) 및 나) 외의 부분 후단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6)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로 하며, 같은 표 제1호가목 6) 가) 중 “택시승차대”를 “택시승차대(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곳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6) 나) 중 “사업용자동차”를 “사업용자동차 및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표 제1호가목 6) 다) 중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을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14)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운수종사자”를 각각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표 제1호가목 20)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운수종사자”를 각각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21)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로 하며, 같은 표 제1호가목에 22)부터 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고, 같은 표 제1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호다목 1)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자동차”를 “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다목 2)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3)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자목 중 “택시”를 “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운수종사자와”를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는”을 “운수종사자와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운수종사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하목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한다.

22)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관리를 위한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기여금 산정, 운송시장 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기여금 납부 회피 등의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

다.

23)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 시 사업계획 및 허가 시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편법·불법적 운영(지입 등), 각종 시장 교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4)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채용·계약·관리와 사업운영에 있어 고용·노동·공정거래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7)부터 11)까지란을 각각 9)부터 13)까지란으로 하고, 같은 목 6)란을 8)란으로 하며, 같은 목에 6)란 및 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3)(종전의 11)) 가) 위반행위란 중 “택시운전업무”를 “택시운전업무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로 한다.

6) 법 제49조8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 하거나 여객을 중도 에서 내리게 하는 행 위 나)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인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라)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법 제87조제1항 제4호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7) 6)의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6)의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	---------------	------	--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6의3(중전의 별표 6의2)의 제목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운송가맹사업자”를 “플랫폼가맹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송플랫폼 기준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운송플랫폼 기준을 충족할 것

별표 7 제5호 납부자란 중 “제31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법 제40조제1항, 법 제49조의9 및 법 제49조의16”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 납부자란 중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

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납부자란 중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납부자란 중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2란부터 제14호의4란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호란 및 제16호란을 각각 제24호란 및 제25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란부터 제23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플랫폼운송약관	1건에 1,400원
------------	------------

마. 플랫폼가맹약관	1건에 1,400원
------------	------------

15.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1대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16.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증차 1대당 기본 5,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증차를 제외한 변경의
---	---

	경우 1건에 2,000원
--	---------------

17.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후 플랫폼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허가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1대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	---

18.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1,000원
---	------------

19.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에 30,000원
--	-------------

20. 법 제49조의10제2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1건에 5,000원
---	------------

21.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건에 1,000원
--	------------

22.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1건에 30,000원
---------------------------------------	-------------

23.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라 플랫폼중개	1건에 1,000원
----------------------------	------------

사업의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제4호의4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가맹사업
으로”, “제49조의7”을 “제49조의16”으로, “제93조의9”를 “제93조의19”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제4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6서식부터 제48호의1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

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여객자동차운
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별표 6의2]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4 관련)

1. 허가기준 대수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3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가. 허가신청 차량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 적용 가능)

나. 차고를 한곳에 밀집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1) 자기 소유 외(터미널, 주차장, 국가운영 토지 등)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고지 사용에 대해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운송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플랫폼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송플랫폼 운영을 위한 장비를 갖출 것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휴게실 및 대기실	플랫폼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교육 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 훈련시설은 별도 사용계약이 있을 경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운송플랫폼 기준

가. 호출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 공간 및 1인 이상의 상주 인력을 확보할 것

나. 운송플랫폼

구 분	요 구 사 항
배차 및 운행 관리	· 운전자 정보 사전고지 기능을 갖출 것 · 탑승 전 출·도착지에 따른 총 예상운임, 부가서비스 요금 및 예상 주행거리 사전 고지 기능을 갖출 것 · 현재 주행 속도 및 주행거리를 명확히 표시할 것 · 배차의 공정한 배분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운행 정보를 주기적으로 기록할 것
결제 처리	·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것(선불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 결제 및 결제 취소 처리 기능을 갖출 것
탑승자 안전보장	· 자동 안심서비스(탑승·도착 지인 알림, 실시간 이동경로 조회) 기능을 갖출 것 · 탑승자 연락처 노출 방지 기능(가상/안심전화번호 등)을 갖출 것 · 위험상황 및 민원 즉시 신고/접수 기능을 갖출 것
운송 정보관리	· 전체 차량의 운행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다음 운행정보를 축적·관리 할 것 1) 운행차량별 플랫폼운수종사자 정보 2) 운행차량 기본 정보 3) 출·도착지 운임·요금 등 운행정보 4)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5) 배차실제 시 콜카드 수신차량의 수신시각, 실공차상태 및 위치정보 · 시간대별 운송 수요처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할 것
서비스 평가	·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이용후기 접수 기능을 갖출 것
시스템 안정성	· 네트워크·장비의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이 가능할 것 · 예상 첨두사용량에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장비/서비스 용량을 확보할 것
통신설비	· 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설비(승객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신한 호출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확보 할 것

	·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 호출센터와 차량과의 통신설비(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량이 호출센터와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웹 표준 및 접근성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른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갖출 것
보안 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19-13호, 2020. 1. 2.)을 준수할 것

5. 보험 가입

-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나.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대인배상Ⅱ(책임공제 초과), 대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 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업 종(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업무 범위(한정면허의 경우만 해당함):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차 고 지:	
터미널의 위치(터미널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면허(허가, 등록)연월일:	
면허(허가, 등록)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제49조의18 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을 면허(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 도 지 사	
직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④ 상 호			
⑤ 주 운 행 지 역		⑥차 고 지	
⑦ 허 가 연 월 일		⑧허가 유효기간	
⑨ 허가 자동차 대수	연 월 일	대 수	비 고
⑩ 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연 월 일	인원 수	비 고

– 33 –

[illegible]

- 34 -

(제3쪽)

[illegible]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35 –

(제4쪽)

[illegible]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36 –

(제5쪽)

[illegible]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37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④ 상 호			
⑤ 주 사 업 구 역			
⑥ 면 허 연 월 일		⑦ 면허 유효기간	
⑧ 운송가맹점 자동차 대수	연 월 일	대 수	비 고
⑨ 통신설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38 -

(뒤 쪽)

[illegible]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39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illegible]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40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증 ☐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전화:)
	③ 주 소				
④ 상 호(명 칭)					
⑤ 업 종					
⑥ 면허(허가,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⑦ 재 발 급 사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허가증,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헤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허가증, 등록증)				수수료
					2,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전화:)
	③ 주 소				
④ 사 업 의 종 류		(운영형태:)			
⑤ 변 경 사 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31조·제49조의9·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69조·제93조의10·제93조의19에 따라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휴업 ☐ 폐업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처리기간 허 가 신 고 5 일 3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고인	③ 주 소	(전화:)			
휴·폐업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내용	⑤ 휴업예정기간	부터 년까지(년 월)	폐업 일자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35조·제49조의9·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71조·제93조의10·제93조의1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400원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 회사명: ○ 성 명: ○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사진(여권용) (3.5cm×4.5cm)		
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직인			
※ 1.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신 면허취득자 성명을 적고, 개시대에는 소속 조합명을 적습니다. 2. 자동차번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외에는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148mm×105mm[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예정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예정 운행지역	주 배차대수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공익상 필요한 사유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1부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5.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자동차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플랫폼운송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1부 9.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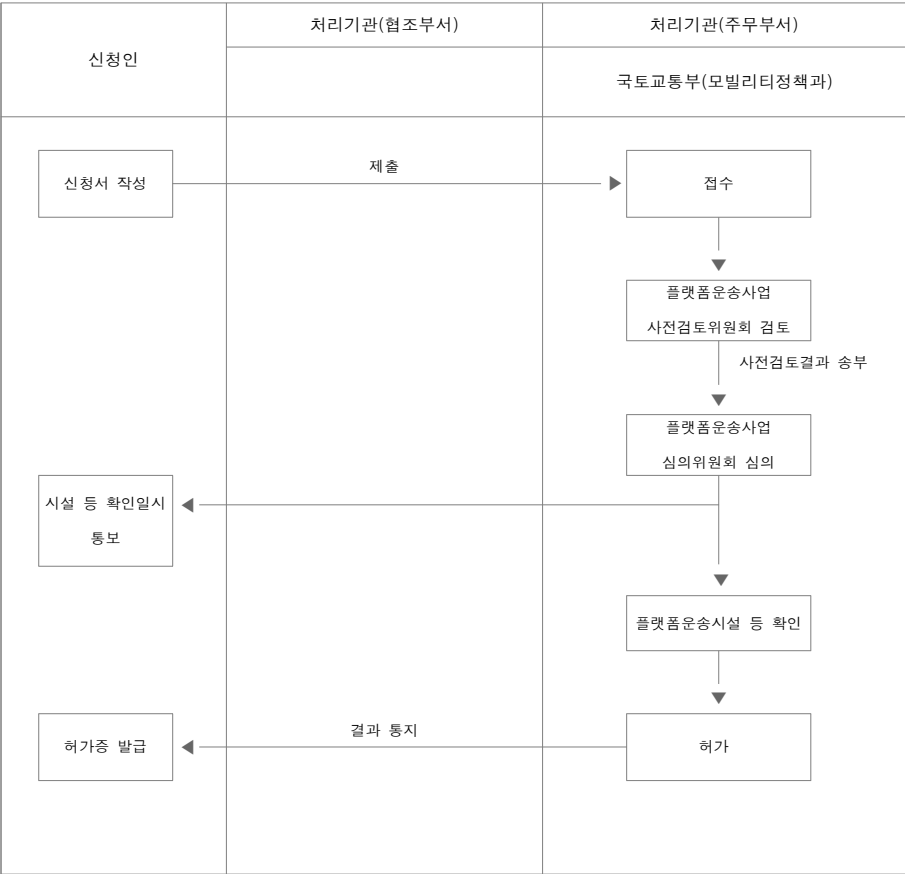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플랫폼운송사업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5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플랫폼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운영형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500 500 5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현재의 허가내용	허가(신청)번호	
		허가일	
		기간만료일	
		주운행지역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대수	
사업갱신의 범위 또는 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7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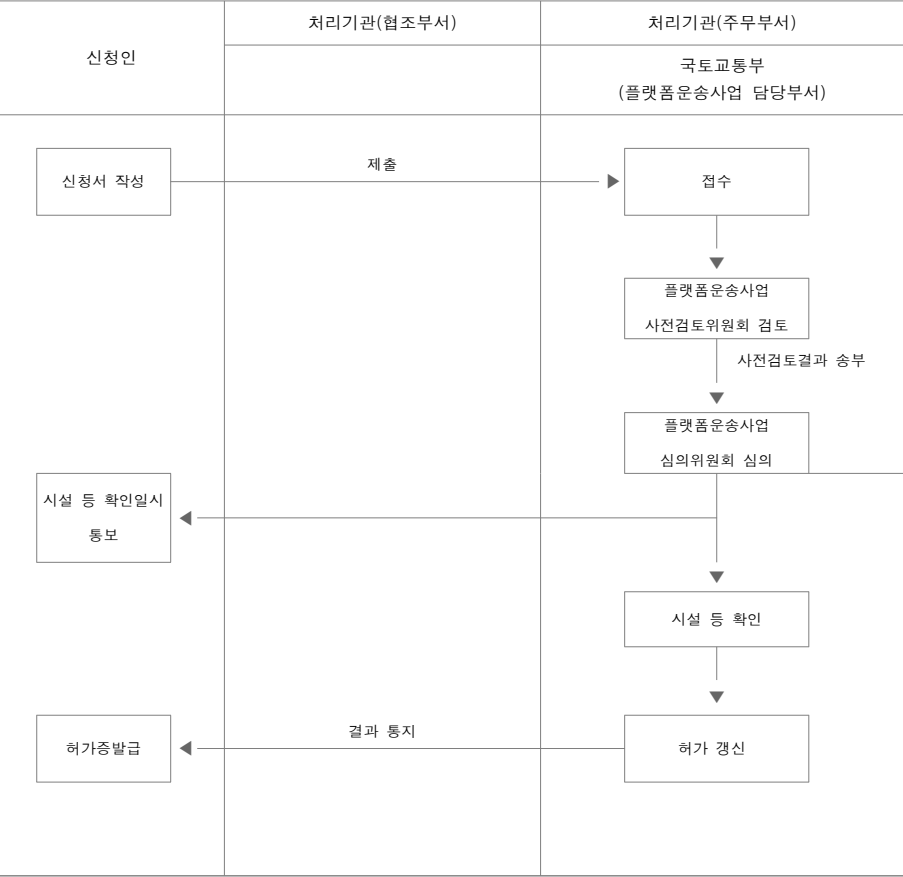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여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여금 납부 연기 사유	기여금 납부 기한		납부 연기 후 납부 예정일
	납부 연기 사유(간략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여금 납부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기여금 납부 연기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지
신청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9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을

[[] 신고
[]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3. 원가계산이나 그 밖에 운임·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만 첨부)		수수료 1,000원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통보
신고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예정 사업구역(최소 행정구역단위 명기)		
	운송가맹점 자동차 대수	일반택시 [] 대	개인택시 [] 대
	주요 부가서비스		
	공익상 필요한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11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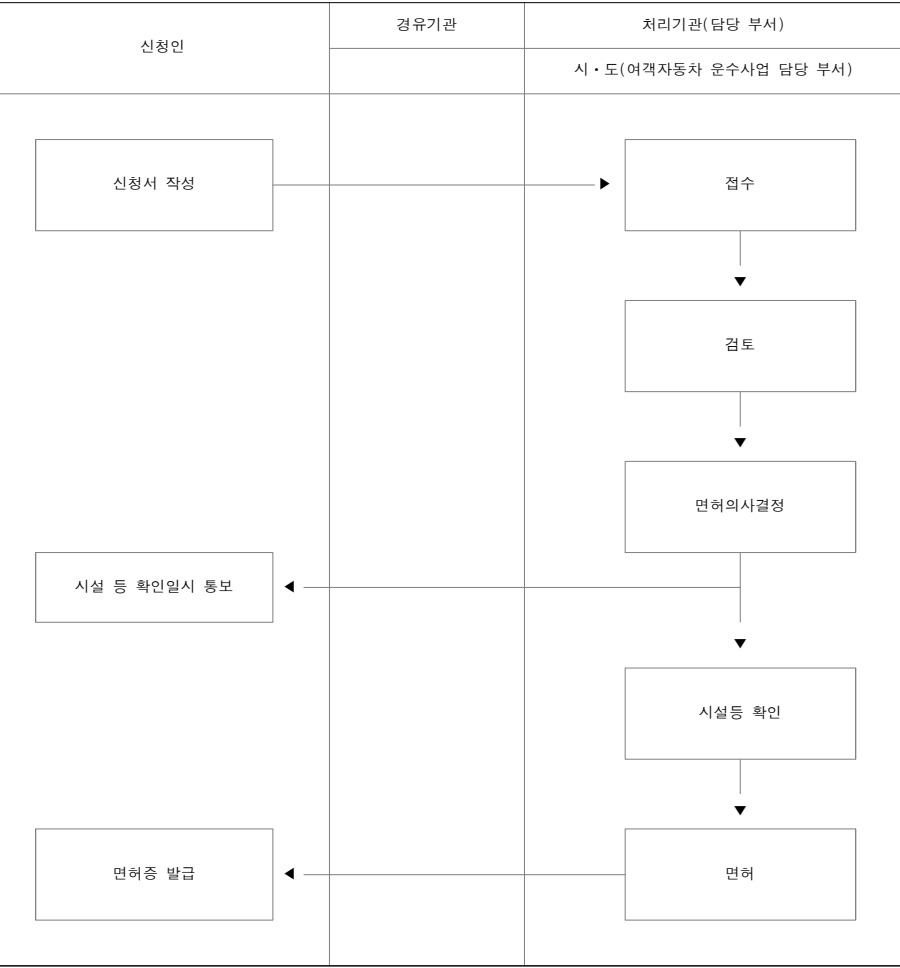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플랫폼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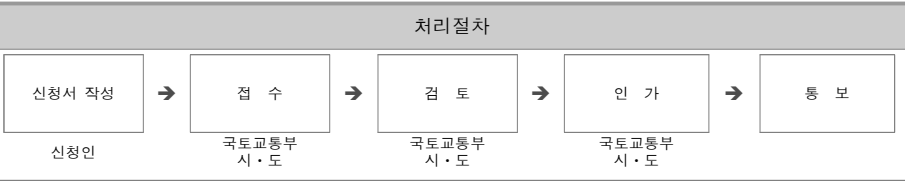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운영형태	
	대분류			
	[] 사업구역 변경 [] 부가서비스 변경 [] 그 밖의 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13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플랫폼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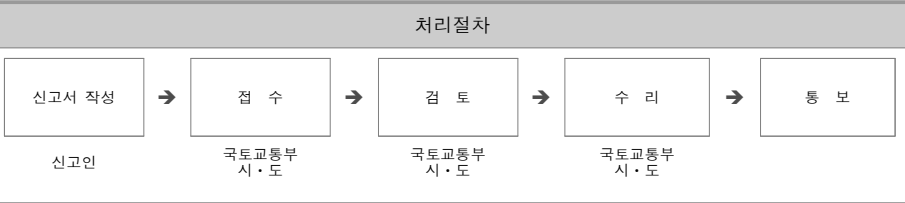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경일자		
	년 월 일		
	대분류 [] 대표자의 변경 [] 영업소의 설치·이전		
	[] 명칭변경 폐지 []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운송가맹점 운임 · 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구역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변경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 신고] 합니다.

三
二
一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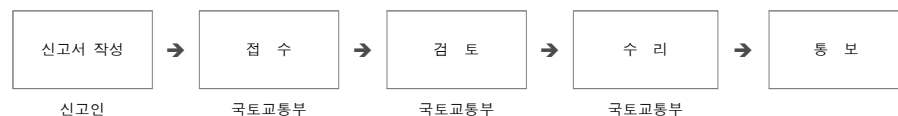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3. 원가계산이나 그 밖에 운임·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만 첨부)	수수로 1,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운송플랫폼 명칭		
	예정 사업구역(최소 행정구역단위 명기)		
	주요 부가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0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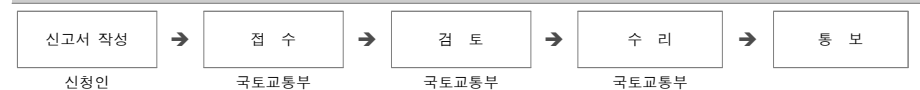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m²)]

[] 변경신고서
[] 말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변경일자 년 월 일			
	대분류 [] 사업구역 변경 [] 부가서비스 변경 [] 사업의 말소 [] 그 밖의 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50 150 150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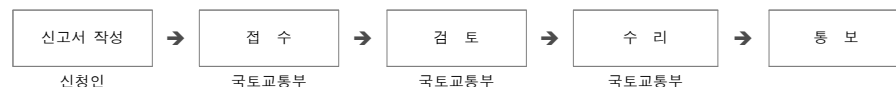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주운행지역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변경 사유		

150 15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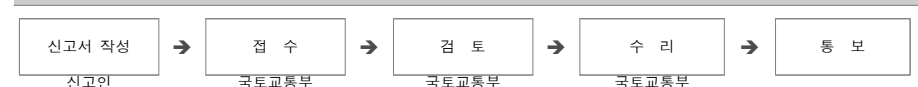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요금표 및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000원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4조, 법 제28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u>면허증</u> 또는 <u>등록증</u> 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 등) ① ----- 제36조, 법 제49조의3, 법 제49조의10 또는 법 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u>면허·허가</u> ----- <u>면허증, 허가증</u> -----.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u>면허증</u> 또는 <u>등록증</u> 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면허대장</u> 또는 <u>등록대장</u> 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 <u>면허증, 허가증</u> ----- <u>면허대장, 허가대장</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9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u>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면허대장</u>	4. 법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u>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허가대장</u>

<신설>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5. 법 제49조의10에 따라 면허를 하였을 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

6. 법 제49조의18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③ ----- 면허증, 허가증 -----.

④ -----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허가증, 등록증)-----.

----- 면허증, 허가증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u>연료전지자동차</u> 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 ----- ----- ----- ----- <u>수소전기자동차</u> ----- ----- ----- ----- ----- -----.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5.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u> (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라. <u>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u>

한다) 상호(<u>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u> 으로 가입한 개인 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 <u>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u> (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
마.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u>사항</u>	마. ----- ----- <u>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생략)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u>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u>법 제21조제13항, 법 제26조제1항제9호, 법 제49조의3제6항 및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u> -----.
<u>제44조의2(운송가맹점의 상호변</u>	<u><삭 제></u>

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93조의2(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93조의2(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별표 6의2에 따른 통신설비(이하 "통신설비"라 한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나. 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다음 각목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 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대수 4.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동차 보험가입 증빙서류 7.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제93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9.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달 방법 6.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 현황 7.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8.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 계획 가.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나.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9.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3.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연식 및 확보방법 4. 주 운행지역 및 각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관리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 현황 7. 운송플랫폼의 현황, 운송플랫폼의 개발, 유지, 보수, 운용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송플랫폼의 운용 계획 등 8. 법 제49조의7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 확보 방법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방안 9. 영업관리 및 차량관리 계획 10. 요금 설계 내용 11.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비스 특화 계획
--	--	--	--

	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 유형 및 운영계획 나. 차량 색상, 마크 등 브랜드 특화계획 다. 그 밖에 서비스 특화계획 12.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비자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계획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제93조의3(면허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3조의2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3조의2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플랫폼운송시설등을 확인하여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등이 제93조의6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따라 플랫폼운송시설등을 확인할 경우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지 여부등을 심의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93조의6제5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4(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3 제3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저 허가기준 자동차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이하 “플랫폼운송시설등”이라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이전·명칭 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다)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시설등의 확인에 대해서는 제9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6(면허기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7(영업 개시일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3조의3제2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개시일을 정할

제93조의6(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주사무소의 이전

3.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②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허가의 갱

수 있다.

②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의 운행실적 및 영업손익 등 사업 운영 실적
2. 법규·의무 위반 관련 처분 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갱신한 경우 제6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2.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3조의8(운송가맹약관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

제93조의8(기여금의 납부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13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 기일 연기 신청서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2.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사항 7.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3조의9(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가계산이나 그 밖에 운임·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
--	----------------------------	--	---	--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신 설>

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관련 서류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0(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플랫폼운송약관의 기재 사항,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서 제출,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58조의3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 설>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적은 서류
-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
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
어야 한다)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
은 서류
-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
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
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
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
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
라 한다) 사본
7.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

- 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송가맹
점 현황
 -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
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
다)
 -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
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대
수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
달 방법
 6.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
현황
 7. 운송플랫폼의 현황, 운송플랫
폼의 개발, 유지, 보수, 운용
인력 및 조직의 구성,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송플랫폼의
운용 계획 등
 8.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송가맹
점 관리 계획
 -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신 설>

차량 관리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
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다. 운송가맹점의 법률준수에
대한 관리 계획
 9. 요금 설계 내용
 10.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비스
특화 계획
가. 부가서비스 유형 및 운영
계획
나.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다. 그 밖에 서비스 특화계획
 11.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계
획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
한 관리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
선에 관한 계획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의 면
 허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는 제93조의11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
 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

<신 설>

<신 설>

고 인정하면 설비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
 시에 설비 등이 제93조의16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3조의13(플랫폼가맹사업 사업
 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9
 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
 른 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
 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 사업
 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
 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

<신 설>

<신 설>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이전·명칭
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
호의10서식의 플랫폼가맹사업
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 사업
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법 제49조의10제3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의 면
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5항에

<신 설>

<신 설>

다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의 기
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7(운송가맹점의 상호변
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플랫폼가맹
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개인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
송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
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
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
한다)

제93조의18(플랫폼가맹사업의 운
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49조
의13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
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
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이 운임·요금의 신고 또
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

<신 설>

맹점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원가계산이나 그 밖에 운임·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경우 관련 서류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9(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

<신 설>

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3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

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운송플랫폼의 현황, 운송플랫폼의 개발, 유지, 보수, 운용인력 및 조직의 구성,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송플랫폼의 운용 계획 등

<신 설>

3.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 운송중개요금(이하 “플랫폼 운송중개요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운송플랫폼에 부가되는 서비스
 5. 운송플랫폼 배포 계획 및 운송플랫폼을 통한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6.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 ③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운송플랫폼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제93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플랫폼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

<신 설>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49조의1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제93조의22(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

	류(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 다)
--	-----------------------